# 인천지방법원 2018. 8. 17. 선고 2018구합5049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

인 천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건 2018구합50493 징계처분무효확인

원고 A

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, 모C

피고 D고등학교장

변론종결 2018. 5. 18.

판결선고 2018. 8. 17.

주 문

-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# 청구취지

피고가 2017. 9.29.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

## 이 유

- 1. 처분의 경위
- 가. 원고는 2017. 9.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D고등학교(이하 '이 사건 학교'라 한다) 2학년에 재학 중이 었다.
- 나.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(이하 '이 사건 위원회'라 한다)는 2017. 9. 27. 회의를 개최하고(이하 '이 사건 회의'라 한다),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

법률(이하 '학교폭력예방법'이라 한다)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, 이에 따라 피고는 2017. 9. 29. 원고에게 서면사과조치를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원고가 F 학생(이하 '피해학생'이라 한다)의 휴대폰을 허락없이 비밀번호를 풀고 사용함. 이과정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의 친구에게 카톡으로 욕설을 함(이하 '제1처분사유'라고 한다). 택시비 및 노래방 비용 등을 피해학생의 카드로 결제한 뒤, 피해학생이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주지 않음(이하 '제2처분사유'라고 한다).

[이전 그거] 다톤 없는 사실 가 제2 5호증이 가 기채 벼로 저체이 최지 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,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- 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- 가. 절차상 하자 유무
- 1) 원고의 주장
- 이 사건은 사안이 경미하고, 당사자가 화해하여 피해학생과 그 어머니가 이 사건 회의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데도, 피고는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또는 중재를 하거나,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, 당사자의 의사에도 반하여 이 사건 회의를 소집하였는바,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.
- 2) 판단
- 가) 자치위원회의 소집 요건

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,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,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,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,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,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,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그런데 이 사건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,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,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, 가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회의가 소집된 데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수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 나) 자체적 해결절차

앞서 본바와 같이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, 자치위원회를 소집하기 전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정 또는 중재 등 자체적 해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, 위와 같은 자체적 해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- 나. 처분사유의 존부
- 1) 원고의 주장

제1처분사유는 원고가 피해학생을 겨냥하여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고, 제2처분사유는 원고와 피해학생은 필요할 때 돈이 있는 사람이 결제를 하고 나중에 돌려 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돈이 없어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어서,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, 이 사건 처분은 그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.

2) 인정 사실

2022-10-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가) 피해학생은 이 사건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.

#### [제1처분사유 관련]

원고가 제 휴대폰을 남모르게 훔쳐 G이에게서 비밀번호를 캐낸 뒤에 제 카톡 친구들에게 언어폭력을 하고 인터넷기록이며 제 사생활이 담긴 걸 계속 훔쳐보았습니다. (중략) 그리고 제 핸드폰을 숨겨놓고서 제가 아무리 찾고 찾았는데 원고가 나중에 숨긴 걸 주는 것입니다. 제 핸드폰을 숨긴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제 폰을 자기 꺼 다루듯이 함부로 만지고 숨겼습니다. (중략) G이에게는 사과를 받고 화해하고 싶습니다. 하지만 이 싸움을 일으키게 한 원고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.

#### [제2처분사유 관련]

원고가 돈을 여러 차례, 택시비, 노래방비 등등 수만 원대의 돈을 빌렸음에도 자꾸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며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. 그 돈은 4만원도 넘지만 2만 원 정도만 달라 해도 자꾸 지가 화내고 피했습니다. 그래서 매일 전화해서 몇 번이고 달라고 했지만 대답만한 채, 실제로 돈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피씨방비를 준 것도 겨우 1,000원 가량이지 제가 빌려준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4만 원도 실제로 피씨방이나 음식점, 매점에서 꾼 것들 뺀 값입니다.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고 패드립을 저한테 수십 번 했습니다.(중략) 그리고 원고가 저한테 돈을 자꾸 쓰고도 주지 않아서 학교에서 공연보러 갔을 때 제가 선생님께 말하려 하자 협박까지 했습니다. 그리고 만 원을 던지고 나서돈을 줬다고 하고 다시 선생님께 말하려 하지 않자 돈을 다시 뺏어갔습니다.

나)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.

저는 피해학생의 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는 행위에 평소에 지나치면 때리는 행위도 하였습니다. 그리고 택시비, 노래방비를 갚지 않은 것 또한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는 F의 폰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욕을 했습니다.

다) 피해학생은 이 사건 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.

제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제 친구에게 욕설을 하고 그 내용을 지워서 많이 속상했습니다. 그리고 장난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속상했습니다. 지금은 원고가 사과를 해서 괜찮아졌습니다. 제 카드로 계산한 뒤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. 이 사건이 발생한 뒤로 돈을 갚았습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을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# 3) 판단

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'학교폭력'을 '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 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

2022-10-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을 이용한 음란·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'로 규정하고 있다. 살피건대, 1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'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정보 등'은 학교폭력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에 불과한 점,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1, 2처분사유가존재한다고 인정되고, 이는 '공갈, 협박, 모욕 또는 명예훼손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정보'와 유사한 행위이며,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사소한 장난으로 여겼을 수 있으나 피해학생은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·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,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, 3 피해학생은 이법원에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장난에 불과하고 정신적인 피해는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(갑 제3호증)를 제출하였으나, 이는 사후에 원고가 피해학생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, 4 원고가 사후에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하고 원만하게화해하였다고 하더라도,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,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#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#### 판사 김예영(재판장) 조성훈 이서윤